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9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9.
3. 회 부 일 : 2024.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헌·불법 행위를 자행함.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법기관으로써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외부 침입 시 위원·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4(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선거관리위원회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헌법 제114조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헌법 제114조제7항).¹⁾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1)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²⁾

그런데, 현행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³⁾ 이는 법률로 청사 방호 및 보안의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나 법원과 같은 타 헌법기관과 차이가 있음.

《 청사 방호 관련 헌법기관 사례 》

구분	국회		법원	헌재	정부과천청사	
	내부	외곽			내부	외곽
운영사항	경호기획관실	국회경비대	보안관리대		관리과	청원경찰대
구성원	경호·방호직	서울청 소속 경찰	보안(방호)직		방호직	청원경찰
근거	국회법 (§144)		법원 조직법 (§55의2)	헌재 규칙	행안부 직제 (시행령)	청원경찰법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에 출입하는 동안 청사 방호를 위해 근무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⁴⁾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3) 현재 법률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보안 관련 규정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과 “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이 있음.

4) 경향신문(2024.12.4.),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당시 선관위 근무한 당직자는 5명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직자 5명 중 방호직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함. 나머지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당직자와 시설관리 공무직 직원 등이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독청사를 갖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경우 방호직공무원 6명이 안내동(청사 진입 시 별도 건물, 청사 外)과 안내실(청사 內 사무실)로 나누어 근무하며, 야간에는 안내동에만 1명의 방호직공무원이 근무하는데,⁵⁾ 이는 기관의 규모 및 업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223명의 경호·방호인력⁶⁾을 두고 있는 국회와 큰 격차를 보임.

《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 비교 》

구 분	국회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	3,586명	중앙	372명
		시도	64명
		구시군	1,970명
방호 관련 공무원	223명	6명(중앙 과천청사)	
전체 대비 비율	6.2%	1.6%	

※ 자료: 국회사무처 직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2024.10.)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⁷⁾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사 규모가 작고 단독 청사가 아닌 경우(임차청사)가 많다는 점,⁸⁾ 통합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방호 운영 현황 자료는 참고자료 참조

6)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인원. 의회경호담당관 67명, 의회방호담당관 156명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을 그대로 입법화할 경우 일부 자구 수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 필요하다고 보임.

선거인명부 등 중요 장비 및 자료의 대부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경비대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하여 경비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요 인원에 따라 별도의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⁹⁾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대를 설치하여 기초적인 청사 방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대를 모두 설치하는 것은 소요되는 인력·비용 대비 그 효과성·효율성 및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체청사가 없어 유상임차를 하는 곳은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중 1곳(서울), 252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는 60곳에 달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고, 각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읍·면·동 사무소의 공무원인 간사·서기로 구성·운영됨.(법 제15조제16항)

9) 해당 개정안에 대해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2025.2.3. 현재 기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방호 운영 현황

□ 방호개요

- 인 원: 방호직공무원 6명(6급 1명, 7급 이하 5명)
 - 임 무: 출입자 통제·안내, 청사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 ※ CCTV현황: 72대(내부 33대, 외부 39대)

□ 근무장소·인원 : 안내동 4명(4교대 근무), 안내실 2명(주간 근무)

구 분	주간(08:00~18:00)		야간(18:00~익일08:00)	
	안내동	안내실	안내동	안내실
평 일	3	2	1	-
주말(공휴일)	1	-	1	-

※ 안내동 4명 중 1명은 야간 근무에 따른 비번

□ 근무내용

- 주 간
 - 안내동(3명) : 정문 출입자 신원확인 방문증 교부 또는 통제
 - 안내실(2명) : 청사 내 안내 및 출입통제
 - 공 통 : 청사 내·외부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 야 간
 - 안내동(1~2명) : 정문 출입자 통제

-
- ▶ 22시 청사 내부 순찰 → 사무실 시건 확인, 야근자 파악 등
 - ▶ 청사 정문(철문): 평일 19:00~22:00 일부 폐쇄, 22:00~익05:00 전체 폐쇄, 휴일 24시간 폐쇄
 - ▶ 본관 출입문: 평일 10:00~익05:00 폐쇄, 휴일 24시간 폐쇄
-

□ 기타사항 : 선거 시 사설 전문요원 2명 증원(선거일전 30일부터)